#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8

발의연월일: 2021. 1. 15.

발 의 자:정춘숙·김민기·김윤덕

김정호 · 김영진 · 임종성

윤후덕 • 박재호 • 장경태

이정문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 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 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 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4항 신설).
- 나. 운용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 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둠(안 제 103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한다)
-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라 한다)
-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 에 관한 사항
  - 다.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의 결정

- 1) 공단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
-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사항
- 3)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
- 라.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3. 위험관리 · 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 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

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 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
	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u>있는 경우</u>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
	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u>밝히는 경우</u>
<u>④</u> ~ <u>⑦</u> (생 략)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
	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

- 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 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 원회"라 한다)
-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 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 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라 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 의한다.
-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u>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u> <u>사항</u>
  - <u>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u>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 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각 목의 사항
  - <u>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u> <u>준·방법·절차에 관한 사</u> <u>항</u>
  -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 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
    - 3단이 판단하기 곤란
       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
       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 임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 을 요구한 사항

- 3)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수탁자책임전문위 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한 사항
- 라.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 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 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 항
- 마.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 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 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 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3. 위험관리 · 성과보상전문위원
   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 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
•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 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
•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성 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